

◎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15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령(안),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2002. 2. 28. 법률제 6671, 2002. 3. 25. 공포)됨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제출·협의 대상 사업 및 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공공사업주관자중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협의하는 사업 및 시설의 규모를 현행 연간 1만 TOE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4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로 확대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중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

2).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토지조성사업을 실시한 후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를 당해 토지의 분양조건에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분양 받은 자에게 그 토지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에너지사용계획협의결

과를 공지하여 협의된 내용의 이행을 제고를 도모함.

3).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법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로 하도록 규정함.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자동차로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방법으로 관보 또는 일간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을 정함.

다.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안)

1) 열사용기자재중 검사준비 미비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검사신청서의 반려사유와 처리기간을 명확히 함.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예정일 15일전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사용 중지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각종단위표기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SI(The International System or Units) 단위로 개정하고 기존사용하던 단위(M.K.S)도 병기함

3. 기타문의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주소 : 경기도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02-2100-5423, FAX : 02-504-5001

E-mail : kang4444@mocie.go.kr

◎ **환경부공고제2002-74호**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치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3대강 수계별 특별법 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와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기구 설치의무대상의 조정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범위의 현실화하며,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에 오수처리대책 지정대상을 포함.

나. 운영기구의 설치대상에서 소유자가 30인이하의 소규모 빌라, 연립주택 등을 제외시켜 설치대상을 현실화함.

다. 분뇨등처리업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축산폐수를 전량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

라.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에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부과금액을 조정.

**3. 기타문의**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

(전화 : 02-504-9255, 팩스 : 02-504-544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오수과)

**○ 환경부공고제2002-75호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대강 수계별 특별법 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와 축산폐수의 관리가 필요한 미규제동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에 포함시키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처리시설의 운영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며, 비정상운영신고 및 개선명령으로 인한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시 중복되는 서류제출을 줄여주는 등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토끼·개·오리·메추리 등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규제동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에 포함(안 제8조의2)

나.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방류수수질기준의 수변구역에 포함(안 제9조제1항, 별표 1)

다. 개선명령이나 비정상운영신고 시 그 사유가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31조, 제33조)

라. 여유용량이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축산폐수를 상시적으로 유입시키는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징수근거 마련(안 제69조)

**3. 기타문의**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

(전화 : 02-504-9255, 팩스 : 02-504-544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오수과)

◎ **환경부고시제2002-94호**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하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2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강하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1. 사업목적

양평군 강상면, 강하면 및 광주군의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고도처리하여 팔당호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변경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광주시장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2리 21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3,500㎡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변경)

- 명칭 : 강하 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 3,600톤/일
- 처리방법(변경)
  - 당초 : 산화구법
  - 변경 : PhiCD(유로변경침전지내장형산화구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 예정배수구역 : 7618.5ha
- 예정처리구역 : 238.8ha

마. 사업시행기간 : 200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 없음

사. 기타 관계서류는 양평군 환경관리과(031-770-245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02-95호**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포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하자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1. 사업목적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지역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고도 처리하여 팔당호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변경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양평군수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65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843㎡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변경)

- 명칭 :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300톤/일
- 처리방법(변경)
  - 당초 : 토양점축식산화공법+토양Trench공법
  - 변경 : 간헐포기점축산화공법(DeNiPho)

라. 예정배수구역 미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 예정배수구역 : 156.0ha
- 예정처리구역 : 17.5ha
- 마. 사업시행기간 : 2002년~2003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 없음
- 사. 기타 관계서류는 양평군 환경관리과(031-770-245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환경부고시제2002-96호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1-107호, 2001. 8. 27.)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중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2호중 “창유리 세정액”을 “세정액 및 다목적 세정액”으로, 동조제38호중 “테이프 레코더”를 “재생·기록기”로, 동조제52호중 “샤워헤드”를 “수도꼭지 절수부속”으로 한다.

제2조에 제80호내지 제8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0. 낚시미끼
  - 81. 가방
  - 82. 태양전지 및 자가 발전장치 사용 제품
- 제3조(생략)

<제3조 개정내용 요약>

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개정(고시 제3조제2항)

- 각호 공통 적용 : 국제표준 단위(SI unit)병기
-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내지 12조 규정 준수 및 환경표지의 국가간 상호인정 등에 대비

예)

현 행	개 정
1.0kgf/cm <sup>2</sup>	1.0kgf/cm <sup>2</sup> (98kPa)
30,000kcal/h	30,000kcal/h(125MJ/h)

- ‘3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인증기준 개정
  - 대상제품명 변경 :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및 다목적 세정제
  - 적용범위 확대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다목적 세정제 포함
  - 제품의 환경성·안정성 강화 : 내분비계 장애물질, 흡입독성이 있는 향료 등의 사용 금지
- ‘38.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인증기준 개정
  - 대상제품명 변경 : 비디오 재생·기록기
  - 적용범위 확대 : 현행 VCR(VTR) ⇒ DVD player 및 복합계층까지 포함
  - 대기시 소비전력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기준보다 다소 강한 수준으로 설정
  - Eco Design 관련 기준 강화.
    - 유해화학물질 사용 금지 : PVC, 할로젠계 난연제, 카드뮴·수은전기
    - 제조과정에서의 재활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 향상
- ‘51. 절수형 양변기’ 인증기준 개정
  - 적용범위 확대 : 로탱크 부착 변기 외에 세척밸브 부착 변기 포함
    - 사용수량 3L형 변기에도 적용가능
  -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세척성능 시험방법 변경
    - 미국의 ANISI/ASME, 일본의 Eco Mark방법 응용
- ‘52.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부속’ 인증기준 개정
  - 적용범위 확대 : 수도꼭지 절수부속 포함
    - 층간, 수압차가 있는 건축물에 사용 가능한 절수부속

지

확대

- WASCO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절수기기에 환경표지 인증 가능
- 사워헤드 성능기준 강화: 최소 물줄기 높이 규정

○ '53. 양변기용 절수부속' 인증기준 개정

- 적용범위 확대: 재사용수 공급부속 포함
- 절수성능 기준 및 세척성능 시험방법 일부 변경
  - 2가지 이상의 절수기능(대소변 구별, 사용수량 저감)을 지는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법 설정

○ '78. 종이점착테이프 및 종이점착시트' 인증기준 개정

- 적용범위 확대: 테이프 및 시트용 박리지 원지 포함
- 점착제층에 대한 알칼리용액에서의 해리성 시험방법 변경
  - 개정 국방부 조달규격 시험방법과의 조화

○ '79. 벽지' 인증기준 개정

- 벽지의 지지체에 대한 고지 사용률 기준 삭제 및 박리지에 대한 고지 사용률 기준 예외조항 신설
  - 현재, 고지를 사용한 벽지 지지체는 원료공급 불가
  - 고지로서 회수·재활용 가능한 박리지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고지사용 의무를 면제

나. 추가 선정제품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신설(고시 제3조제2항)

○ 80. 낚시미끼

- 인조미끼 : 납(Pb)·카드뮴(Cd) 등 유해원소 함량 기준 설정, 납(Pb)·PVC 등 환경유해 재질 사용 금지
- 분해미끼 : 납(Pb)·카드뮴(Cd)·수은(Hg) 등 유해원소 함량 기준설정, 물에서의 풀림성 기준 및 풀린 분해미끼에 대한 수질오염부하(COD, TN, TP) 기준 설정
- 제품의 1차 포장재로서 PVC 등 염소계 합성수지 사용 금지

○ 81. 가방

- 환경친화적 재질의 원단 사용
  - PVC 등 염소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 EU 수준의 원단 유해성분 함량기준 설정 : 염소화페놀류(PCP 등), 납·카드뮴 등 유해원소, 유기주석화합물(TBT), 아조 염료 등
- KS 기준보다 우수한 품질·성능수준 확보 요구
  - 파열강도, 염색성, 손잡이·멜빵 부착강도
  - 발수성, 내수성 확보

○ 82. 태양전지 및 자가발전장치 사용제품

- 유해화학물질 사용 금지 : 할로겐계 난연제(PBBs), 카드뮴·수은전지, 유기할로겐화물 함유 커패시터
- 사용단계의 폐기물 등 저감 : 1차전지(건전지) 또는 외부전원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조일 것
- 품질·성능 확보를 위한 기준 설정
  - 태양전지 제품의 최저동작조건, 적용광속에서의 동작지속시간 설정
  - 자가발전장치 사용 제품의 정상동작 기준 등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 동 고시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과(전화 : 504-9242) 및 환경마크협회(전화 : 031-398-012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3조의 개정사항은 분량이 너무 많아 전문 게재를 생략하고 요약문을 게재하였는 바 개정전문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및 환경마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ela.or.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02-97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

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200호, 2001. 12. 31.)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2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

제2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자동차의 세부기준)

2. “다목적형 승용차” 및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라 함은 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난한 도로를 운행하는데 적합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를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공고 제2002-77호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자동차의 차종별 분류를 유럽연합기준으로 조화시키고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중 경유 경·승용1 자동차의 기준을 다른 차종과 형평성을 맞추어 기 생산중인 자동차에 대한 유예기준을 설정하

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자동차의 분류기준중 2002.7.1일 이후 승용1 및 승용2 자동차의 분류기준에서 크기기준을 삭제하고 차량총중량을 3.5톤에서 2.5톤으로 완화 조정함(안 별표5)

나. 경유사용 경자동차·승용1 자동차중 2002.6.30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2.7.1일부터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2002.12.31일까지 유예함(안 별표20)

다. 상기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유예받은 경유사용 경자동차·승용1 자동차는 제작차 인증을 다시 받은후 출고하여야 함(안 부칙 제2항)

**3. 기타문의**

환경부 교통공해과에 문의

(전화 : (02)504-9249, 전송 : (02)504-5957)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02-99호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당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도당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1. 사업목적**

서산시 음암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인 신장천의 수질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서산시장
-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492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634번지 일원
- 부지면적: 1,766㎡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칭: 도당 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800톤/일

- 처리방법: CNR공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 예정배수구역: 19.2ha
- 예정처리구역: 5.4ha

마. 사업시행기간: 2002년 ~2005년

바. 사업시행기간: 2002년~2005년

사. 기타 관계서류는 서산시 상하수도 사업소 (042-660-353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편 입 조 서

소재지: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구분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634	답	1,521	1,418	서산시	
2	635	답	1,316	36	강일재	음암면 부장리 635
3	639	답	467	252	서산시	
4	639-1	답	62	42	서산시	
5	640-5	답	95	1	서산시	
소재지: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6	1583-11	도	302	17	서산시	
	계		3,763	1,766		

◎ 환경부고시제2002-100호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암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음암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1. 사업목적

서산시 음암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

으로써 방류수역인 도당천의 수질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서산시장
-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492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954번지 일원
- 부지면적: 1,383㎡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칭: 음암 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 600톤/일
- 처리방법 : CNR공법
-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 예정배수구역 : 45.72ha
- 예정처리구역 : 19.20ha

- 마. 사업시행기간 : 2002년~2005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 사. 기타 관계서류는 서산시 상하수도사업소(041-660-353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소재지 :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954	답	2,580	1,383	서산시	

◎ 환경부고시제2002-104호 ◎

2002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중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  
 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환경부고시 제2002-  
 72호, 2002.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별표의 융자조건란중 융자(대출)금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융자업무위탁기관 0.1%, 금융  
 기관 0.9%

사 업 명	지원대상	융 자 조 건			비 고
		현 행	변 경	증 감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자체	5.08%(5.18%)	4.97%(5.07%)	△0.11%(△0.11%)	- 5년거치, 10년상환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
4. 하수관거정비	"	"	"	"	"
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	"	"	- 3년거치, 7년상환
6.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간	4.00% (5.00%)	4.00% (5.00%)	- (-)	- 5년거치, 10년상환 -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7. 재활용산업육성	시설 및 기술개발자금	5.18%	5.07%	△0.11%	- 3년거치, 7년상환
	경영안정 및 제품유통·판매	(6.18%)	(6.07%)	(△0.11%)	- 2년거치, 3년상환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98이후)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이조건을 준용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환경부공고 제2002 - 84호 ◎

악취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문제로서 악취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악취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별도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악취 관리제도를 정립하고 악취규제지역의 지정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계획 수립·이행 의무 부과 등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지정악취물질"과 "악취배출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함(안 제2조)
- 나.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대기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 악취로 인한 민원현황 등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 라. 악취규제지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악취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시·도 조례의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 마. 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는 지정시 주거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함(안 제23조제2항)

바. 악취규제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 계획의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사.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을 금지하고, 공공수역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이외의 생활환경에서의 악취 발생을 방지함(안 제16조, 제17조)

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악취오염도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동 검사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악취판정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안 제18조 ~ 제22조)

3. 기타문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 02)2110-6790~1  
FAX : 02)507-7028  
E-mail : p0623@me.go.kr

◎ 환경부공고제2002-85호 ◎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악취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대기 환경보전법중 악취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대기오염물질"의 정의에서 악취물질을 제외함.
- 나.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관련 규정을 본 법에서 삭제함.
- 다. 생활악취의 규제 관련 규정을 본 법에서 삭제함.

3. 기타문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 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 02-2110-6790~1, 팩스 : 02-507-7028, E-mail : p0623@me.go.kr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2-14호 ◎



유독물 · 관찰물질중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 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 9. 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 관찰물질지정 별표1의 2002-1-529란 다음에 2002-1-5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2년 7월 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별표1]  
 유독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02-1-530	피리딘-트리페닐보란 (1/1) [Pyridine-triphenylborane (1/1):971-6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유독; 장기간 삼키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음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및 안전 보호구를 착용할 것. ·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고, 이 용기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2-15호 ◎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중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 1997-10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별 표의 2002-3-2104란 다음에 2002-3-2105내지 2002-3-213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2년 7월 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2002-3-2105	1-(2-Hydroxypropyl)-4-aza-1-azoniabicyclo[2.2.2]octane salt with 2-ethyl hexanoic acid (1:1) [CAS No. 103969-79-5]
2002-3-2106	[총칭명] Bis (hydroxyalkyl)alkyl alkenoate polymer with (halomethyl) oxirane, alkyl-(hydroxyalkyl)-alkanediol, hydro-(aminoalkylalkoxy) poly[oxy(alkyl-alkanediol)]ether with alkyl-(hydroxyalkyl)-alkanediol substituted trialkylcyclohexane, alkylenebis[substituted cyclohexane], (alkylalkylidene) bisphenol, oxepanone and substituted alkyl-triazine-trione
2002-3-2107	[총칭명] Methacrylate polymer with polyoxyalkylene and epoxyated methacrylates reaction with aminoethanol
2002-3-2108	[총칭명] Succinate ester
2002-3-2109	Methyl oxirane polymer with oxirane, 4,4'-(1-methylethylidene) bisphenol, $\alpha$ -hydro- $\omega$ -hydroxypoly(oxy-1,4-butanediyl), 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3-aminomethyl-3,5,5-trimethylcyclohexylamine and 1,4-butanediol [CAS No. 부여안됨]
2002-3-2110	[총칭명] Fatty acids, coco polymers alkanolic acid and alkane diol
2002-3-2111	$\alpha$ -Hydro- $\omega$ -hydroxypoly(oxy-1,4-butanediyl) polymer with 1,3-diisocyanatomethylbenzene and 2-hydroxyethyl acrylate - blocked [CAS No. 82339-24-0]
2002-3-2112	2-[Methyl[(nonafluorobutyl)sulfonyl]amino]ethyl 2-propenoate telomer with 3-mercapto-1,2-propanediol, methyl oxirane polymer with oxirane di-2-propenoate and methyl oxirane polymer with oxirane mono-2-propenoate, tert-Bu 2-ethylhexaneperoxoate-initiated [CAS No. 부여안됨]
2002-3-2113	[(Tribromomethyl)sulfonyl]benzene [CAS No. 17025-47-7]
2002-3-2114	[총칭명] Carbopolycyclic substituted aminocarbonyl formamido alkane polyamide
2002-3-2115	[총칭명] Polyalkylene 2-aminocarbonyl aminoamidino alkane
2002-3-2116	Bis[29H,31H-phthalocyaninato(2-)-N29,N30,N31,N32] $\mu$ -[1,1,3,3-tetraphenyl-1,3-disiloxanediolato(2-)-O1:O3] dialuminum [CAS No. 81422-13-1]
2002-3-2117	Pentadecyl methacrylate [CAS No. 6140-74-5]
2002-3-2118	2-(Dimethyl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2-methyl propyl 2-methyl-2-propenoate [CAS No. 66028-15-7]
2002-3-2119	1,6-Hexanediyl bismethacrylate [CAS No. 6606-59-3]
2002-3-2120	Triethylamminium perfluoroalkyl(C=6~16)ethylsulfonate [CAS No. 부여안됨]
2002-3-2121	[총칭명] Butylated cyclyl monosubstituted benzene
2002-3-2122	[총칭명] Ethylated cyclyl monosubstituted benzene
2002-3-2123	2-Chlorobenzothiazole [CAS No. 615-20-3]
2002-3-2124	2-Hydroxy-N-methyl-N-phenylacetamide [CAS No. 42404-09-1]
2002-3-2125	[총칭명] Dialkylated(C=2-6) cyclohexane
2002-3-2126	[총칭명] Dialkylated(C=3-8) cyclohexane
2002-3-2127	[총칭명] Poly chloroalkyl phosphate-phosponate

2002-3-2128	[총칭명] Methacrylate copolymer salt
2002-3-2129	Sulfuric acid, mono(C=16~19-branched and linear alkyl) esters, sodium salts [CAS No. 92797-62-1]
2002-3-2130	Dodecanoyl chloride [CAS No. 112-16-3]
2002-3-2131	2-(2H-Benzotriazol-2-yl)-6-[[3-(1,1-dimethylethyl)-2-hydroxy-5-methylphenyl]methyl]-4-(1,1,3,3-tetramethyl)butyl)phenol [CAS No.209324-18-5]
2002-3-2132	1,3,5-Triazine-2,4,6-triamine phosphat [CAS No. 41583-09-9]
2002-3-2133	2-Ethylhexyl 2-propenoate polymer With ethenylbenzne and 2-methyl-2-[(1-oxo-2-propenyl)amino]-1-propanesulfonic acid, 2,2'-azobis[2-methylbutanenitrile]-initiated [CAS No. 141091-65-8]
2002-3-2134	[총칭명] Polymer of substituted aromatic olefin and substituted alkyl acrylic acid ester
2002-3-2135	[총칭명] Polymers with 4,4' - substituted bis(2-aminophenol) and 1,1' -oxobis benzene-3,3', 4,4' - tetrakis [mixed carboxy chlorocarbonyl and substituted carbonyl]
2002-3-2136	N-Alkyl(C=8~22)trimethylenediamines, acrylated, sodium salts [CAS No. 97659-50-2]
2002-3-2137	[총칭명] Mixture of heteromonocyclephosphate polyoxyalkylene and oxyalkylene phosphate
2002-3-2138	Amides, coco, N,N-bis(hydroxyethyl), propoxylated [CAS No. 395075-28-2]
2002-3-2139	Alcohols, (C=12~15)-branched and linear, ethoxylated propoxylated [CAS No. 120313-48-6]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제2002-112호 ○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1-21호, 2001. 2. 1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중개정

폐기물공정시험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항제4호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소각시설 소각재의 경우

(1) 연소실 바닥을 통해 배출되는 바닥재와 폐열보일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비산재의 채취에 적용한다.

(2) 공정상 소각재에 물을 분사하는 경우(비산방지 및 냉각)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물을 분사하기전에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분이 함유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가능한 수분을 줄여서 채취한다.

(3) 연속식 연소방식의 소각재 반출설비에서 채취하는 경우 바닥재 저장조에서는 부설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채취하

고, 비산재 저장조에서는 낙하구 밑에서 채취하며, 소각재가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재차량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지내에 야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적더미에서 각 층별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분식 연소방식의 소각재 반출설비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는 하루동안의 운전횟수에 따라 매 운전시마다 2회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료의 양은 1회에 500g 이상으로 한다.

㉠ 소각재 저장조에서 채취하는 경우

저장조에 쌓여 있는 소각재를 평면상에서 5등분한 후 각 등분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소각재를 상하층으로 잘 섞은 다음 크레인으로 일정량을 저장조 밖으로 운반한다. 다만, 시료채취장소가 좁아 작업하기 힘든 경우에는 크레인으로 부터 직접 일정량을 채취하는 것으로 한다. 시료는 운반된 소각재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각 등분마다 500g이상을 채취한다.

㉡ 낙하구 밑에서 채취하는 경우

시료의 양이 1회에 500g 이상이 되도록 채취하며, 전체시료의 수는 제6호(가)에 따른다.

㉢ 야적 더미에서 채취하는 경우

야적 더미를 2m 높이마다 각각의 층으로 나누고 각 층별로 적절한 지점에서 500g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며, 전체시료의 수는 제6호(가)에 따른다.

㉣ 소각재 운반차량에서 채취하는 경우

소각재가 적재되어 있는 운반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6호(다)에 따른다.

(4)위 (3)의 각 경우별로 채취한 시료는 혼합하여 제2항 시료의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 최종 시료로 한다.

제2장제1항제5호중 “1회에 100g이상을 채취한다”를 “1회에 100g 이상 채취한다. 다만, 소각재의 경우에는 1회에 500g이상을 채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

2002년 7월 13일

국무총리서리 장 상

국무위원환경부장관 김명자

○ 대통령령 제17677호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이 제정(2002. 1. 14, 법률제6604호)됨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상류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로부터 최소한 물의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숙박시설·음식점·공장·축사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수변구역 지정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연마을 지역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함(영 제3조).

나.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경우 그 목표수질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 중 수질환경기준 II등급 이내로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영 제10조).

다. 시설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지정되 배

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산정방법과 총량초과 부과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정함(영 제12조 내지 제17조).

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장학급 지급, 주택개량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1조 내지 제25조).

마. 주암호·동북호·상사호·수어호·탐진호를 물이용부담금부과대상 공공수역으로 정하고, 동 부담금의 부과율은 2년마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등 물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4조).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

2002년 7월 13일

국무총리서리 장상

국무위원환경부장관 김명자

### ○ 대통령령 제171678호 ○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 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1. 14, 법률 제6605호)됨에 따라 금강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

영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강수계로부터 취수한 물의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물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숙박시설·음식점·공장·축사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을 지역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함(영 제5조).

나.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경우 그 목표수질은 주요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환경기준중 수질환경기준 II등급 이내로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영 제10조).

다. 시설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산정방법과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절차등을 정함(영 제12조 내지 제17조).

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장학급 지급, 주택개량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사항을 정함(영 제21조 내지 제25조).

마. 금강본류,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으로 정하고, 동 부담금의 부과율은 2년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4조).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囍

2002년 7월 13일

국무총리서리 장상

국무위원환경부장관 김명자

○ 대통령령 제17676호 ○

낙동강계수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1. 14, 법률 제 6606호)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로부터 취수한 물의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숙박시설·음식점·공장·축사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댐의 상류지역을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인 경우에는 그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으로 하고, 지방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인 경우에는 그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으로 하도록 함(영 제3조).

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를 만들어야 하는 조건을 붙여야하는 하천인접지역의 범위를 낙동강본류인 경우에는 그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인 경우에는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함(영 제7조).

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사업장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경우 그 목표수질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중 수질 환경기준 II등급 이내로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영 제12조).

라. 시설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산정방법과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정함(영 제14조 내지 제19조).

마.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정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장학금 지급, 주택개량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2조 내지 제26조).

바. 낙동강 본류,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다목적댐과 그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등을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으로 정하고, 동 부담금의 부과율은 2년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8조 내지 제35조).

<법제처 제공>

